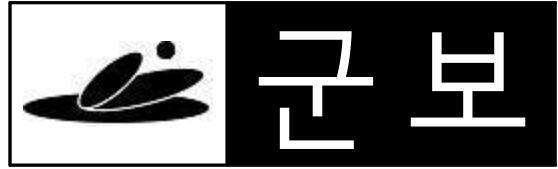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92호 2023. 2. 15.(수)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42호 :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82호 : 군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8
- 예산군 공고 제2023-183호 : 예산 군계획시설(5호 어린이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9
- 예산군 공고 제2023-184호 : 군계획시설(11호 어린이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0
- 예산군 공고 제2023-212호 : 2040년 예산 군기본계획(변경)(안)열람 공고 11
- 예산군 공고 제2023-223호 :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12
- 예산군 공고 제2023-224호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14
- 예산군 공고 제2023-260호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15

입법예고

- 예산군 고시 제2023-207호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예산군 고시 제2023-210호 :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예산군 고시 제2023-211호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회 람									
--------	--	--	--	--	--	--	--	--	--

예산군 고시 제2023-42호

예산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산 군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 업 명	위 치	사업의종류	사업량	비고
응봉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40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유원지)	· 시설 증축 -건축면적: 3,659.42㎡ -연면적: 5,168.25㎡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 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4.12.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계(94필지)				77,559			
1	응봉면 후사리	85-3	유	665	10	예산군	
2	응봉면 후사리	88-1	답	458	134	예산군	
3	응봉면 후사리	120	도	892	169	예산군	
4	응봉면 후사리	120-1	잡	46	46	예산군	
5	응봉면 후사리	121-1	답	102	7	예산군	
6	응봉면 후사리	123	잡	5,955	4,861	예산군	
7	응봉면 후사리	123-1	답	197	197	예산군	
8	응봉면 후사리	123-3	도	864	663	예산군	
9	응봉면 후사리	133	대	642	642	예산군	
10	응봉면 후사리	133-1	대	24	24	예산군	
11	응봉면 후사리	133-2	대	7	7	예산군	
12	응봉면 후사리	133-5	임	3,438	3,438	예산군	
13	응봉면 후사리	133-6	임	85	85	예산군	
14	응봉면 후사리	133-7	임	203	203	예산군	
15	응봉면 후사리	133-8	임	154	154	예산군	
16	응봉면 후사리	133-9	임	3,742	3,742	예산군	
17	응봉면 후사리	133-10	대	200	200	예산군	
18	응봉면 후사리	134	전	264	264	예산군	
19	응봉면 후사리	135	대	465	465	예산군	
20	응봉면 후사리	135-2	대	86	86	예산군	
21	응봉면 후사리	136	대	165	165	예산군	
22	응봉면 후사리	136-1	임	15,390	532	예산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23	응봉면 후사리	136-2	임	2,138	494	예산군	
24	응봉면 후사리	136-4	임	3,400	196	예산군	
25	응봉면 후사리	136-6	구	177	177	국(건설부)	
26	응봉면 후사리	136-7	대	126	126	예산군	
27	응봉면 후사리	136-8	구	146	146	국(건설부)	
28	응봉면 후사리	137-1	전	886	886	예산군	
29	응봉면 후사리	137-2	대	116	116	예산군	
30	응봉면 후사리	138	전	433	433	예산군	
31	응봉면 후사리	138-1	전	443	443	예산군	
32	응봉면 후사리	139	전	668	668	예산군	
33	응봉면 후사리	139-1	전	1,008	1,008	예산군	
34	응봉면 후사리	140	전	6,315	6,315	주창예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70
35	응봉면 후사리	140-5	전	1,205	1,205	예산군	
36	응봉면 후사리	142	전	1,521	1,521	주창예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70
37	응봉면 후사리	142-1	전	66	66	예산군	
38	응봉면 후사리	144	전	307	307	주창예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39	응봉면 후사리	145	과	3,466	3,466	예산군	
40	응봉면 후사리	146	전	337	337	예산군	
41	응봉면 후사리	147	전	1,150	1,150	예산군	
42	응봉면 후사리	148	과	179	179	예산군	
43	응봉면 후사리	148-1	과	1,755	1,755	예산군	
44	응봉면 후사리	149	전	241	241	예산군	
45	응봉면 후사리	149-1	전	815	815	예산군	
46	응봉면 후사리	168	대	84	84	신상록	16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47	응봉면 후사리	168-1	답	7	7	신상록	168
48	응봉면 후사리	168-4	답	15	15	신상록	168
49	응봉면 후사리	169	대	9	9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68
50	응봉면 후사리	169-1	전	470	470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68
51	응봉면 후사리	170	대	203	203	주창예	296
52	응봉면 후사리	170-1	대	313	313	주창예	130
53	응봉면 후사리	170-2	전	82	82	주창예	130
54	응봉면 후사리	170-4	임	1,980	1,980	주창예	130
55	응봉면 후사리	170-8	임	7	7	주창예	130
56	응봉면 후사리	171	답	583	583	예산군	
57	응봉면 후사리	172	답	491	491	임영택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218
58	응봉면 후사리	173	답	1,597	1,597	예산군	
59	응봉면 후사리	174	답	1,136	1,136	예산군	
60	응봉면 후사리	175	답	675	675	예산군	
61	응봉면 후사리	176	답	1,254	1,254	예산군	
62	응봉면 후사리	177	답	1,008	1,008	예산군	
63	응봉면 후사리	178	답	621	621	예산군	
64	응봉면 후사리	179	전	76	76	장석로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5
65	응봉면 후사리	180	답	251	251	예산군	
66	응봉면 후사리	181-2	답	3,243	3,243	예산군	
67	응봉면 후사리	181-3	답	390	390	예산군	
68	응봉면 후사리	182-3	답	1,336	1,336	예산군	
69	응봉면 후사리	182-4	답	2,549	2,549	예산군	
70	응봉면 후사리	183-1	답	3,037	3,037	예산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71	응봉면 후사리	184	답	1,607	1,607	예산군	
72	응봉면 후사리	185	답	691	691	예산군	
73	응봉면 후사리	186-2	답	1,708	1,708	예산군	
74	응봉면 후사리	187-1	전	34	34	임종춘	전라북도 군산시 궁말길 55-8, 103동 1101호 (구암동,군산구암휴먼시아아파트)
75	응봉면 후사리	221	답	471	471	예산군	
76	응봉면 후사리	437-2	천	75,380	2,375	국(농림부)	
77	응봉면 후사리	439-4	도	40	5	국(농림부)	
78	응봉면 후사리	444-1	도	290	290	국(농림부)	
79	응봉면 후사리	444-3	도	117	117	국(농림부)	
80	응봉면 후사리	444-4	도	10	10	국(농림부)	
81	응봉면 후사리	448	잡	2,321	63	예산군	
82	응봉면 후사리	448-1	도	473	302	국(재무부)	
83	응봉면 후사리	463-1	구	824	824	국(농림부)	
84	응봉면 후사리	464-1	도	13	13	국(농림부)	
85	응봉면 후사리	465	도	350	350	국(농림부)	
86	응봉면 후사리	470	도	102	102	국(농림부)	
87	응봉면 후사리	471	도	278	278	국(농림부)	
88	응봉면 후사리	산72-1	임	992	992	예산군	
89	응봉면 후사리	산73	임	3,967	3,967	예산군	
90	응봉면 후사리	산77-7	임	2,965	2,965	김철태 외 1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11, 103동 1007호 (신탄진동,라이프새여울아파트)
91	응봉면 후사리	산77-8	임	109	109	예산군	
92	응봉면 후사리	산78-2	임	99	99	박인성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1 주공아파트 1311-100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93	응봉면 후사리	산79-3	임	4,066	31	예산군	
94	응봉면 후사리	산103	도	595	595	국(건설부)	

예산군 공고 제2023-182호

군계획시설(도로:중로 1-19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1. 군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1-19호선)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건축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2.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8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예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공사
- 명 칭 : 택시승강장 이설공사

다. 사업개요

- 도로정비 L=32.0m B=2.5m, 택시승강장 이설 1식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2.11.17. ~ 2022.12.31.

예산군 공고 제2023-183호

예산 군계획시설(5호 어린이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1. 예산 군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건축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2.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5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예산 군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사
- 명 칭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개요

- 공원정비 1,500㎡
(파고라 및 의자 2개소, 놀이시설 설치 2개소, 운동기구 5개소, 배드민턴 코트 1개소 안내판 3개소 등)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2.7.15. ~ 2022.12.21.

예산군 공고 제2023-184호**예산 군계획시설(11호 어린이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예산 군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건축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2.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6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예산 군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사
- 명 칭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1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개요

- 공원정비 1,782.4㎡
(파고라 및 의자 3개소, 놀이시설 설치 4개소, 운동기구 2개소, 다목적 구장 설치 1개소, 안내판 3개소 등)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2.7.15. ~ 2022.12.21.

예산군 공고 제2023-212호

2040년 예산 군기본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2040년 예산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여건변화 및 관련 부서(기관) 협의 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내용이 발생하여 의견청취를 위해 열람 공고 합니다.

2023. 2. 15.

예산군수

1. 열람사항 : 「2040 예산 군기본계획(변경안)」 주요 변경 내용

2. 열람기간 : 2023. 2. 15.(수) ~ 2023. 3. 2.(화)

3. 열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건축과(7층)에 관계도서 비치

4. 「2040 예산 군기본계획(안)」 주요 변경 내용

- 계획인구 : (당초) 97,300인(상주인구 87,500인, 주간활동인구 9,800인)
(변경) 101,000인(상주인구 87,500인, 주간활동인구 13,500인)

○ 토지이용계획 :

(단위 : km², %)

구 분	당초 계획(안) (2021년 공청회)	증감	변경 계획(안) (협의의견 반영)	구성비
합 계	542.27	-	542.27	100.00%
시가화용지	15.66	증) 0.63	16.29	3.00%
시가화예정용지	27.08	감) 1.00	26.08	4.81%
보전용지	499.53	증) 0.37	499.90	92.19%

5. 의견 제출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23. 3. 2(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예산군 도시건축과 사무실에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도시건축과 (☎041-339-7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3-223호**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1.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041-339-77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야생동물 임시보호소

다. 사업개요 : 부지조성 2,300㎡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대학교총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분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2022년 3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변경	2022년 3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마. 열람기간 : 2023. 2. 15. ~ 2022. 3. 2.(15일간)

바. 열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계획팀 (041-339-7702)

아. 관계도서 : 생략(예산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단위:m²)

순번	주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주	비고
1	예산읍	대회리	1	학교	317,269	317,269	교육부	
2	예산읍	대회리	1-3	"	917	917	"	
3	예산읍	대회리	11-2	"	9,712	9,712	교육부 1인	
4	예산읍	대회리	11-3	"	900	900	"	
	소 계				328,798	328,798		
5	대흥면	갈신리	1	학교	187,233	187,233	"	
6	대흥면	갈신리	5	답	235	235	전봉규	
7	대흥면	갈신리	7	전	198	198	김보현	
8	대흥면	갈신리	8-4	임야	15,278	15,278	교육부 1인	
9	대흥면	갈신리	10	"	952	952	전봉규	
10	대흥면	갈신리	산52	임야	22,471	8,921	교육부외 7인	
11	대흥면	갈신리	산52-1	"	1,132	1,132	교육부	
12	대흥면	갈신리	산53	"	46,710	46,710	"	
	소 계				274,209	260,659		
	계			(12필지)	603,007	589,457		

예산군 공고 제2023-224호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 1.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298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공사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3,526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건축물 추가 신축 3,526㎡ 건축 면적 2427.92㎡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로 22
- 성 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변경)

(변경전) 2021. 4. 23. ~ 2022.12.31.

(변경후) 2021. 4. 23. ~ 2023.12.31.

마. 열람기간 : 2023. 2. 15. ~ 2022. 3. 2.(15일간)

바. 열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계획팀 (041-339-770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별첨

아. 관계도서 : 생략(예산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번호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298	대	97,858.3	3,526	예산군					

예산군 공고 제2023-260호**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33-24번지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예산군수

1. 건 명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5. ~ 3. 2.(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배달일자	등기번호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성명	주소					
1. 최춘욱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 2023.1.31 .	3. 13018-0443 4. -6935	2023.2.8.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시송달 공고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33-2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 명칭 :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건축 1식(76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예산군수
-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토지조서: 붙임/물건조서: 붙임 편입토지 상의 물건 일체

사. 문의장소 :

-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2), 기획실(☎041-339-712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토지)

지역: 예산읍 예산리

구분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율	성명	주소	
1	333-24	대	765	765	김*희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50/13048	-	-	-	-
2					박*선	예산군 예산읍 교남길	10/13048	-	-	-	-
3					오*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32/13048	-	-	-	-
4					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4/13048	-	-	-	-
5					이*우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46/13048	-	-	-	-
6					전*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5	92/13048	곡*연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근저당 권	-
7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1264/13048	-	-	-	-
소 계			765	765	-	-	-	-	-	-	

(지장물)

지역: 예산읍 예산리

연번	지번	지목	종류	면적(m ²)		건축물소유자			관계인		권리이전과목명
				건물면적	평면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계			786	786						
1	333-24	대	건물(아1호)	16	16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	-	-
2			건물(아2호)	16	16			-	-	-	-
3			건물(아3호)	9	9			-	-	-	-
4			건물(아4호)	9	9			-	-	-	-
5			건물(아5호)	9	9			-	-	-	-
6			건물(아6호)	9	9			-	-	-	-
7			건물(아7호)	9	9			-	-	-	-
8			건물(아8호)	9	9			-	-	-	-
9			건물(아9호)	9	9			-	-	-	-
10			건물(아10호)	9	9			-	-	-	-
11			건물(아11호)	9	9			-	-	-	-
12			건물(아12호)	9	9			-	-	-	-
13			건물(아13호)	9	9			-	-	-	-
14			건물(아14호)	9	9			-	-	-	-
15			건물(아15호)	16	16			-	-	-	-
16			건물(아16호)	16	16			-	-	-	-
17			건물(아17호)	9	9			-	-	-	-
18			건물(아18호)	9	9			-	-	-	-
19			건물(아19호)	9	9			-	-	-	-
20			건물(아20호)	9	9			-	-	-	-
21			건물(아21호)	9	9			-	-	-	-
22			건물(22호)	9	9			-	-	-	-
23			건물(아23호)	9	9			-	-	-	-
24			건물(아24호)	9	9			-	-	-	-
25			건물(아25호)	9	9			-	-	-	-
26			건물(아26호)	9	9			-	-	-	-
27			건물(아27호)	9	9			-	-	-	-
28			건물(아28호)	9	9			-	-	-	-
29				8	김*래	예산읍 아리랑로 93-10,	784/315 06	-	-	-	
30			건물(아29호)	315	6	김*희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587/315 06	-	-	-

31				10	박*옥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015/31506	-	-	-
32				10	윤*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6번길	1015/31506	-	-	-
33				6	이*덕	예산군 예산읍 공평리 84	587/31506	예산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오기면 오기중앙로 37	근저당권
34				7	이*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653/31506	-	-	-
35				11	전*진	예산군 신양면 대덕남길	1097/31506	-	-	-
36				9	정*순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893/31506	-	-	-
37				10	차*식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1015/31506	-	-	-
38				5	최*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548/31506	-	-	-
39				10	최*옥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1015/31506	-	-	-
40				223	예*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2297/31506	-	-	-
41		점포	35	35	예*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	-	-
42		점포	21	21			-	-	-	-
43		점포	42	42			-	-	-	-
44		점포	20	20			-	-	-	-
45		점포	21	21			-	-	-	-
46		점포	42	42	유*일	예산군 예산읍 교남길	-	-	-	-

예산군 공고 제2023-207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외국인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인구증가 시책 사업 지원 확대 및 신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다자녀가구 정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인구증가 시책 지원 내용 신설(안 제3조제1항)

- 출산여성 운동비(안 제3조제1항제13호)
- 청년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안 제3조제1항제14호)
- 국적취득자 지원금(안 제3조제1항제15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6호)

○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안 제3조제2항 별표1)

- 전입실비 등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또는 2명 이상 편입한 경우 ⇒ 타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변경 외국인
 - . 지원내용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 입장권 2매 및 예산국밥시식권 2매 중 선택, 태극기 1세트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 입장권 2매 및 예산국밥시식권 2매, 태극기 1세트 (세대당)
-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변경: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 . 지원대상 : 군 소재 대학교 재학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 . 지원대상 : 만30세 이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 만20세 이하의 둘째아이 이상 대학생
-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 둘째아이 이상

. 지원내용

① 전.월세 보증금 ⇒ 삭제

②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기간

: 2년(최대 4년까지 지원) ⇒ 2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 지원대상 : 만18세 ~ 39세 이하 ⇒ 만18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만 40세이하) ⇒ 신혼부부(만 45세이하)

○ 예외지원 기준 조문 재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2)

- (현행)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변경) 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입법예고 기간 : 2023. 2. 8. ~ 2. 27.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9,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 전자메일 : lee6889@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9, fax : (041)339-7209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학생”을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출산여성 운동비
14.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15. 국적취득자 지원금
16.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출산육아 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아이 : 500만원(1년에 25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아이 : 1,000만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이 : 1,500만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아이 : 2,000만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3,000만원(1년에 600만원씩 5년간 지급) 	보건소 (읍·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등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1일 5,000원/최대 20일)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소 (읍·면)
출산축하 기념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축하 물품 지원(총 20만원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등 	보건소 (읍·면)
난임부부 시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가 모두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로 지급 ※ 다만,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기준 적용 	보건소 (읍·면)
전입 실비 등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전입 학생 생활용품비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20세 이하의 둘째 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다만,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시: 100만원 • 입학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단 최초입학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시” 지급은 당초 “입학시”지급선정자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	총무과 (읍·면)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결혼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가능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모두 전입시: 100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100만원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총무과 (읍·면)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 부부(만 45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주택 소유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총무과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연 임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이자: 전액 지원 지원기간: 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졸업 : 5년 - 졸업 후 미취업 : 2년 (단 휴학기간은 지원기간에서 제외) 	
출산 여성 운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 출생 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 (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월 10만원씩 3개월 운동비 지급 ※ 관내 운동 업체 이용시 지급 	총무과 (읍·면)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이 없고,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이 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의무 거주 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우리군 거주 시 신청 가능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 없는 배우자·자녀·부모 1명 이상과 청년 근로자 본인으로 구성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월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포함)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정착지원금: 1가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만원 추가 지원 	경제과 일자리팀 (읍·면)
국적 취득자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50만원 지급 	총무과 (읍·면)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총무과 (읍·면)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u>다자녀가구</u>”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기간 경과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전입 <u>대학생</u> 생활용품비</p> <p>5. ~ 1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학생</u> -----</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u>출산여성 운동비</u></p> <p>14. <u>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u></p> <p>15. <u>국적취득자 지원금</u></p>

<신 설>

13. · 14. (생 략)

② · ③ (생 략)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출산 육아 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 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 록이 군으로 되 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 등록기간이 6개 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 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아이 : 500만원 (1년에 250만원씩 2 년간 지급) •둘째아이 : 1,000만 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이 : 1,500만 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아이 : 2,000만 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3,000 만원(1년에 600만원 씩 5년간 지급) 	보건소 (읍·면)
산모·신 생아 건강 관리사 비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 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 록을 군에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 한 급여·서비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 복지 해산비 등)를 받는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 원사업 대상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 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 원사업 비대상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 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 침에서 정하고 있 는 ‘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 만, 서비스가격 기준 이 변경될시 변경되 	보건소 (읍·면)

16.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17. · 18.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출산 육아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모·신 생아 건강 관리사 비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출산 축하 기념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축하 물품 지원 (총 20만원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식품: 소고기, 미역 등 	보건소 (읍·면)	출산 축하 기념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 실비 등	<u>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및 예산국밥시식권 2매 중 선택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총무과 (읍·면)	전입 실비 등	<u>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최초 1회만 지급 	(현행과 같음)
전입대 학생 생활용품비	<u>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총무과 (읍·면)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u>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최초 1회만 지급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하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u>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시: 100만원 입학 후 1년 경과시 : 100만원 (단 최초입학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시” 지급은 당초 “입학시” 지급선정자에 한하여 조건 유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20세 이하의 둘째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u>「고등교육법」</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지원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부서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다만, <u>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종 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대학의 1/2범위 내 지원</u>	지시 지급)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다만, <u>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u>		
기업체 및 공공 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 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u>채류지 변경 외국인</u> <u>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시: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시: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시: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총무과 (읍·면)	기업체 및 공공 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 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u>채류지 변경 외국인</u>	(현행과 같음) ※ <u>최초 1회만 지급</u>	(현행과 같음)
결혼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모두 전입 시: 100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 시: 100만원 	총무과 (읍·면)	결혼 축하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 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보증금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보증금 : 최대 1억원 이내 - 월세 보증금 :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현행과 같음)
청년 전·월세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 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 부부(만 40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무주택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총무과 (읍·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 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 부부(만 45세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 지원기간 : 2년 • 주택구입 대출이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주택 소유 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세 ~ 39세 이하 의 1인 가구 청 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 위소득 150% 이하 가 구 지원금액 : 연 임 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 1년(최 대 2년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 는 만 18세 ~ 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 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현행과 같음)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 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생 또는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대출이자 :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7년 - 재학·졸업 : 5 년 - 졸업 후 미취업 : 2년 (단 휴학기간은 지원 기간에서 제외)	총무과 (읍·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 는 만 18세 ~ 45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 단에서 대학학자 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 에 재학생 또 는 졸업생(졸 업 후 2년 이 내 미취업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출산 여성 운동비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아기 출생 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 (외국인 포함)	•최대 월 10만원씩 3개월 운동비 지급 ※ 관내 운동 업체 이용 시 지급	총무과 (읍·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청년 전입근 로자 정착지 원금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 산군 주민 등록 등재 사 실이 없고, 관 내 공장 등록 한 중소·중	•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최 대 월 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전입근로수 당 및 정착지원금 포함)	경제과 일자리 팀 (읍·면)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p>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외국인 포함)</p> <p>※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이 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의무 거주 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우리군 거주 시 신청 가능</p> <p>●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 없는 배우자·자녀· 부모 1명 이상과 청년 근로자 본인으로 구성된 가구</p>	<p>- 전입근로수당 : 1인당 월 20만원 지원</p> <p>- 정착지원금 : 1가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만원 추가 지원</p>	
국적 취득자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1인 50만원 지급	총무과 (읍·면)
전입 학생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학기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총무과 (읍·면)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지원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 부서
기숙사비 지원	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사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u>다문화 가정</u> 중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참고】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예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8.5.>

3.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4. 청년의 주거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7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2.8.5.>

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5.>

□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군 공고 제2023- 210호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22. 12. 2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근거법령 개정(안 제6조 본문)

- (현행) 영 제10조제1항
- (개정안)「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제1호 ~ 제5호)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 추가
- 소송 등 지원 대상 범위를 재직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 2023. 2. 7. ~ 2. 2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안전관리과(참조 : **의회법무팀 ☎ 041-339-7137, FAX : 041-339-7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기획실 의회법무팀
- 전자메일 : pchjms@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137, fax : (041)339-71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적극행정위원회) 군수는 <u>영 제10조제1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u></p> <p>2. <u>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적극행정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p> <p>-----</p> <p>-----.</p> <p>1. <u>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p> <p>2. <u>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u></p> <p>3. <u>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u></p> <p>4. <u>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 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u></p> <p>5. <u>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p> <p><u>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u></p>

현 행	개 정 안
	<p><u>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p><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u></p> <p><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 지 않은 경우</u></p> <p><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 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붙임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생략)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

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 ⑥ (생략)

예산군 공고 제2023-211호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업무 이관에 따른 미정비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간사 현행화(안 제10조제1항)
 - (현행)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 (변경) 간사는 인구정책대응팀장이 된다.

4. 입법예고 기간 : 2023. 2. 8. ~ 2. 27.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9,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 전자메일 : lee6889@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9,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서무담당”을 “인구정책대응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u>서무담당</u> 이 된다. ② (생 략)	제10조(간사) ① ----- -----, --- <u>인구정책</u> <u>대응팀장</u> ---. ② (현행과 같음)